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45호

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

『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30.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 개요

□ **사업 개요**

○ **(사업 목적)**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
○ **(사업 규모)** 2,000백만 원(수준확인 2,000개사 지원)

*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**(지원 대상)**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○ **(지원 조건)**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(기업당 최대 백만 원)

○ **지원 내용**

- **(스마트화 수준확인)**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
- **(고도화 전략 제공)**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

2. 신청방법 및 자격 등

□ 신청기간·방법

○ **(신청기간)** ‘26. 1. 30.(금) ~ 예산 소진시까지(수시 접수)

○ **(신청방법)**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신청

☞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 안내 → 사업 공고

○ **제출서류**

제출서류 목록
1.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
2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3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
4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* 제출서류 양식(신청서 등)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신청자격

○ 국내 제조 중소·중견기업*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* "중소기업기본법" 및 "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"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
**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(종된 사업장 포함), 증빙서류(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❶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(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

* 참여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 - 마이페이지 - 나의 기업과제 현황에서 확인

❷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
*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,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, 솔루션, 유지보수 내역 등) 제출 필요

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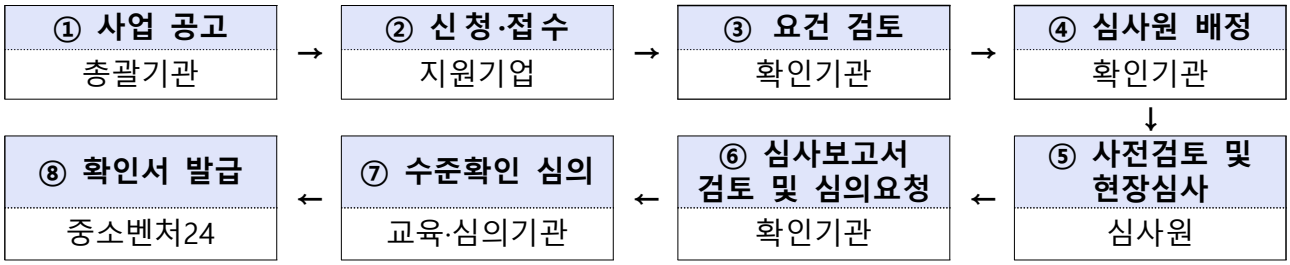
○ **지원 제외사항**

▷ 휴·폐업중인 기업
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
▷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

3. 추진 절차

☞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추진 절차



□ 평가 절차

○ **(요건검토)**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검토, 검토 결과 “적합”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

○ **(수준확인)** 심사원 배정 및 지원과제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

○ **(결과심의)** 현장심사보고서 기반 수준확인 결과 심의

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 수행

○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

*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

○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,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, 발급된 확인서 정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함

* 사업 신청 전, 기업명, 대표자, 주소 등 기업정보 최신화 요망

○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
5. 문의처

구분	담당기관	문의사항	전화
총괄기관	중소벤처기업부	시행계획 수립·총괄	1357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사업 운영 문의	044-300-0955
확인기관	스마트제조혁신협회	사업 신청·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	02-3473-3777
	대한상공회의소		02-6050-3854